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3. 11. 29(수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
운영 지원 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추 병 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·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2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금천구민의 직장운동경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포터즈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)
- 마.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 조치
- 다. 합의기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2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- 서포터저 :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,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
- 3)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4)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)
 - 활동 : 직장운동경기부 응원 및 지원활동
 - 구성 : 50명 이내, 임기 1년
- 5)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 - 활동 물품 지원 : 단체복, 응원도구, 홍보물 등
 - 상해보험 가입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직장체육 진흥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, 스포츠클럽 등 금천구를 대표하는 체육 활동 및 경기 등에도 본 서포터즈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3. 8. 21.] [법률 제19479호, 2023. 6. 20., 일부개정]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7.>

④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9. 3. 18., 2012. 2. 17.>

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2020. 12. 8.>